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8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신정훈  
차지호 · 이광희 · 모경중  
윤종균 · 권철승 · 박정현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면전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를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

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43조 등).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경우에는 자동차등을”을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단서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동차 및”을 “자동차,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자의 노면전차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를”로, “자동차등에”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이용하

여”로, “자동차등을 흠치거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흠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제4호, 제5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호, 제22호 및 제23호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148조의3제2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자동차등에”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로 한다.

제152조제1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을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60조제1항제9호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자동차,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자의 노면전차 및

③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④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략)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 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

-----.

1. ~ 4. (현행과 같음)

⑤ -----  
-----  
-----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를-----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

⑥·⑦ (현행과 같음)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

-----  
-----  
-----  
-----  
-----.

1. -----  
-----자동차등 또는 노  
면전차를-----  
-----  
-----  
-----  
-----  
-----  
-----  
-----  
-----  
-----  
-----.

2.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3. -----

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나. (생략)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  
-----  
-----

라. -----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  
-----







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5의2. (생략)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 10. (생략)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4. -----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5.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6. ~ 10. (현행과 같음)

10의2.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  
-----

11.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 다. (생략)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 21. (생략)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  
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  
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  
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  
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  
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  
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  
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  
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 ④ (생략)

제148조의3(벌칙) ① (생략)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12. -----자동차등 또  
는 노면전차를-----

13. ~ 21. (현행과 같음)

22. -----  
-----  
-----  
-----자동  
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23. -----  
-----  
-----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3(벌칙)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  
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  
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  
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  
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  
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  
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  
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자동차등 또  
-----는 노면전차를-----  
-----  
-----.

③ -----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  
-----차에-----  
-----  
-----.

제152조(벌칙) -----  
-----  
-----  
-----.

1. -----  
-----  
-----  
-----  
-----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의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  
-----  
-----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  
-----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  
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  
람

1의2. -----  
-----  
-----  
-----아니하게 설  
치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  
차를-----  
--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2. -----  
-----  
-----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0조(과태료) ① -----  
-----  
-----  
-----.

1. ~ 8. (생략)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② ~ ④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